이혼 전 재산 보전처분 관련 법령

[가사소송법] 제62조(사전처분)

법률 제20432호 · 2026. 1. 1. 시행 · 제1항과 제5항 발췌

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,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(現狀)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,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, 관계인의 감호(監護)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가사소송법] 제63조(가압류, 가처분)

법률 제20432호 · 2026. 1. 1. 시행

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(本案)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민사집행법」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
③ 「민사집행법」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사집행법] 제276조(가압류의 목적)

법률 제20733호 · 2026. 2. 1. 시행

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사집행법] 제300조(가처분의 목적)

법률 제20733호 · 2026. 2. 1. 시행

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.

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